

의안번호	2216061
의 퇴 인	박균택의원
회 답 일	2026.3.23.
추계번호	26D0194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(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) 제38호의2	38의2. 지식재산처에 근무하며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국가 첨단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	
2	안 제6조(직무범위와 수사관할) 35의2 바목 및 사목 신설	바. 「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, 제7항 제37조에 규정된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범죄와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38조에 규정된 범죄 사. 「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50조에 규정된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범죄	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5조(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)제38호의2 신설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6조(직무범위와 수사관할) 35의2 바목 및 사목 신설	

2. 상세 사유

-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 확대(안 제5조 및 제6조)
 - 개정안에 따라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「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상의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범죄,

「국가첨단전략사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의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범죄를 포함하는 경우,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증가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수사경비 등으로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
- 다만, 개정안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추가지명되는 공무원의 수와 수사범위 확대에 따른 수사관련 예산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워 현 시점에서 추계가 곤란함

- － 지식재산처는 2026년 예산 기준 “특별사법경찰 운영 및 수사·단속 지원사업”에 63억 6,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, 특별사법경찰 제도 운영(10억원), 부정경쟁행위 단속지원(44억 7,300만원), 디자인 침해 단속지원 운영(2억 1,200만원), 디지털 포렌식 지원 사업(6억 8,200만원)을 집행하고 있음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보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임지원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지원	02-6788-4664	Img1@nabo.go.kr